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2044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20445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가단73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희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7. 4.

판결선고 2024. 9. 12.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가단7362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라 한다)와 D, E 사이에 2021. 11.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1. 12. 1. 접수 제116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선정자(이하 ‘피고 C’라 하고, 피고 B와 피고 C를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와 D, E 사이에 2021. 11.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1. 12. 1. 접수 제116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H”을 “D”으로, 제6면 제11행의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일수, 판사 설승원, 판사 윤지숙

선 정 자 명 단

1. B

2. C

끝.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동

[도로명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84.9167㎡

- 이 상 -

